# (전북특별자치도 x 우리금융그룹 x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) 2025년 금융혁신 벤처창업 지원사업 with 디노랩전북 1기》 참가기업 모집 공고

(재)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금융(핀테크) 창업생태계 조성 및 혁신적인 금융 아이디어 기술을 보유한 창업자 발굴·육성·지원을 목적으로 우리금융그룹 디노랩(전북 1기)과 함께하는 『2025 금융혁신벤처창업 지원사업』을 운영하오니 우수한 금융혁신 역량을 가진 (예비) 창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5년2월19일(재)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대표이사

# I 모집개요

#### □ 사업목적

○ 금융혁신 분야(핀테크) 창업생태계 조성 및 혁신적인 금융 아이디어 기술을 보유한 창업자 발굴 및 육성

## □ 주요내용

- 모집대상 : 금융혁신(핀테크) 분야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\* 핀테크 분야(모바일 지급결제, 블록체인, 보안인증, 인슈어·레그테크, 데이터 분석 등)
- 선정규모 : 총 7개사 내외(사업화지원(신규) 5개사, 사후관리(기존) 2개사)
  - 지원에 적합한 기업이 없을 경우 선정 규모 조정될 수 있음
- 지원내용 : 사업화지원금 최대 35백만원(자부담 현물 20%, 현금 10%)
  - 사업화지원 분야 : 시제품 개선, 마케팅, 투자유치, 지식재산권 확보 등
  - 창업 공간 제공
  - 교육·컨설팅 : 전문인력 역량강화 교육 및 컨퍼런스, 워크숍 등
- 사업기간 : 협약 후 ~ 2025년 12월 까지

## Ⅱ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

#### □ 신청자격

- 핀테크 관련 분야 (예비)창업자 및 (공고일 이후 7년 이내)창업기업
  - 기존 IT 및 금융·보험 관련 기업은 핀테크 분야 진출의 경우 지원가능
- 금융·보험 IT융복합(핀테크, 금융S/W, 금융보안, 모바일 금융, 보안 인증, 블록체인 기반 금융관련 서비스 등) 기업
- 타 지역 기업은 선정 후 협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점의 도내 이전 또는 지사 및 연구소 설립 가능 기업(사업종료 후 1년 이상 유지)

#### □ 신청제외대상

- 동 사업의 사업화자금으로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
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
-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
- O 기 선정 되어 사업 협약 후 중도 포기 및 중단 처분자(기업)
- 동일 아이템으로 타 기관, 지자체 및 중앙부처의 시업화지원 시업을 수행 중인 자(기업)
-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(개인, 법인)
- 『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』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 으로 본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(기업)
  - ※ [참고 1]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조
- 가상화폐거래소이거나 이를 운영하는 기업
- 기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

#### □ 우대사항(서면평가 적용)

- 1. 전북으로 본사 이전을 희망하는 수도권 금융기술기업 중 매출 1억원 이상(최근 3년간 누적 매출액)이거나 투자유치액 1억원 이상(법인설립일 이후 투자 누적액)(2점)
- 2. 혁신금융서비스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\* 선정 기업(1.5점)
- 3. 금융사, 민간 액셀러레이터(중기부 액셀러레이터 등록기업), 벤처캐피털의 추천서 제출(1점)
- 4. 전북 금융혁신 공유오피스 입주기업(1.5점)

<sup>\*</sup> 금융규제 샌드박스 : 신산업·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

# Ⅲ 지원내용

#### □ 지원내용

○ 사업화자금 : 총 7개사(사업화지원 5, 사후관리 2) 최대 35백만원 지원 (단위 : 천원, 개)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| 지원금    | 기업수 | 합계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|---------|
| 사업화 지원(5개사)<br>사후관리(2개사) | 35,000 | 2   | 70,000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30,000 | 3   | 90,000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27,000 | 2   | 54,000  |
| 합                        | 계      | 7   | 214,000 |

- ※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
  - 시제품 제작, 마케팅, 지식재산권 확보 등을 위한 비용으로 활용 가능

#### ○ 지원항목 및 정의

| 비 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목정의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인건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협약일 이후 채용한 신규 직원이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<br>경우 지급하는 급여  |
| 외주용역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<br>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, 이에 대한 대가를<br>지급하는 비용  |
| 기자재임차비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해당 아이템 개발을 위해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, 장비, 부수 기자재, 서버 등을 임차하는 경비 ex) 클라우드 서버비용 등   |
| 지식재산권확보비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창업아이템과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   |
| 홈페이지제작비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기업 홈페이지 및 플랫폼 체험페이지 등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  |
| 전시회참가비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국내·외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시 참가등록비, 부스 임차비<br>등 소요비용   |
| 홍보영상 및<br>홍보물<br>제작, 기타<br>마케팅비 | <ul> <li>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</li> <li>포털사이트 배너광고, 정기 간행물의 광고게재, 제품 및 기업홍보, 기타 마케팅 등 마케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</li> </ul> |
| 회계감사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창업기업의 협약종료 시점에 전담기관장 또는 주관기관장이<br>지정한 회계법인 감사에 따른 비용   |

※ 전시회 참가비의 경우 전시회 부스, 항공권 지원 가능 이외의 비용은 지원 불가

#### ○ 창업 공간 무상제공

- ㈜효성 협업공간인 미래기술혁신센터(디노랩 보육공간) 지원
- 보육실 현황 : 7개실 (11평 ~ 22평)
- 센터 규모 : 3층(지상), 연면적 1,600 m²
- 시설 세부내용

| 구 분    | 개 소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인큐베이팅실 | 7EA (11~22평/EA) |
| 행 정 실  | 1EA (11평/EA)    |
| 세미나실   | 1EA (16평/EA)    |
| 창업교육실  | 2EA (22평/EA)    |



#### O 교육 및 컨설팅 지원

- 금융혁신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 및 금융 빅데이터 교육 연계지원
- 맞춤형 전문 컨설팅(회계·법률·투자·OI 등)
- 금융사 스케일업 프로그램(금융·인사·세무·노무 등)

#### O 네트워크 및 투자 지원

- 핀테크 컨퍼런스 및 세미나, 데모데이, 유관기관 연계 네트워킹 등
- 우리금융그룹 현업부서 사업 및 투자 연계 등
- □ 사업 수행기간 : 협약일로부터 ~ 2025년 12월까지

# <mark>Ⅳ</mark> 신청 및 접수

- □ 신청기간 : 2025. 2. 19.(수) ~ 3. 10.(월) 15:00
- □ 접수방법 :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온라인 접수
  - 온라인신청사이트(http://event.jbci.or.kr) 공지사항 다운로드
  - 사업지원 신청 : 공고문, 신청서 다운로드 및 온라인 업로드
  - 신청서 수정 및 확인
    - · 공고 마감일까지 수정 및 접수 확인 가능
    - · 이름, 휴대전화, 이메일, 신청 시 설정 비밀번호(숫자4~8자리) 입력 후 본인 신청내용 확인 가능
  - ※ 주의사항 : 마감시간 이후 접수 건에 대해 미접수 처리 예정이며, 접수 마감일 업로드 문제에 대해 센터는 책임지지 않음

- □ 접수문의 : 오픈이노베이션팀 황지영 주임(063-220-8941 / qwer6958@ccei.kr)
- □ 제출서류 ※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
  - O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(필수)
  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1부 (필수)
  - O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(필수)
  - O 대표자 신분증 사본 (필수)
  - O 사실증명(홈택스 발급가능) (필수)
    - 기창업자 : 사실증명원(총사업자등록내역), 사업자등록증(개인, 법인), 법인등기부등본(법인), 폐업증명원(폐업사실이 있을 경우)
  - \* 사실증명 발급절차 : 국세청 홈텍스  $\rightarrow$  민원증명  $\rightarrow$  사실증명신청  $\rightarrow$  사실증명(총사업자등록내역/사업자등록사실여부) \*\* 기창업자 : 현재 혹은 과거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는 자 / 예비창업자 : 현재 혹은 과거에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는 자
  - 실적(매출, 수출, 투자, 고용 등) 증빙서류 (기업성과 작성자)

| 매 출 |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 |
|-----|--|
| 수 출 | 수출실적 증명원(한국무역협회 발급), 수출계약서, 해외특허등록서,<br>국제인증서, 국제협약서 등 |
| 투 자 | 투자계약서(투자금액 포함), 투자금액 입금 통장사본 등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고 용 |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|

○ 기타 제출서류(아이템 관련 증빙 서류) (해당자)

#### □ 선정평가

| <u>n</u> g | 기가단계 | 평가설명   |  |
|------------|------|--|--|
| 1단계        | 서면평가 | · 전문가(금융 또는 IT전문가)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구성<br>· 사업계획서 등 서면평가 → 대면평가 대상선정         |  |
| 2단계        | 대면평가 | · 전문가(금융 또는 IT전문가)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구성<br>· 창업기업 대표자 발표 및 질의응답 등 대면평가 → 최종선정 |  |

#### ○ 서면평가

- 평가항목 : 창업아이템의 기술성 및 시장성, 성장가능성과 사업화 계획의 적정성, 대표자 역량 등
- 최종선발 기업의 1.5배수 이상 선발

#### ○ 발표평가

- 평가항목 : 대표자의 의지와 기업의 역량, 아이템에 대한 전문성과 사업화 가능성 등 평가
- 최종선정 : 최종 평가 통과자에 한하여 최종 확정
- ※ 최종선정기업 중도포기,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로 후순위자로 선발할 수 있음

#### □ 추진일정

| 사업 공고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신청서 접수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결격사유검토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2025. 2. 19. ~ 3. 10. | $\Rightarrow$ | 2025. 2. 19. ~ 3. 10. | $\Rightarrow$ | 2025 2 10 2 11         |
| 홈페이지 등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JBCCEI 온라인접수          |               | 2025. 3. 10. ~ 3. 11.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Ţ                      |
| 2차 발표평가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1차 합격자 발표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1차 서류평가                |
| 2025. 3. 19.          | $\Box$        | 2025. 3. 13.          | $\Rightarrow$ | 2025. 3. 12.           |
| 평가위원회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2025. 5. 15.          |               | 평가위원회                  |
| Ţ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최종 선정기업 발표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협약체결 및 설명회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사업수행                   |
| 2025. 3. 20.          | $\Rightarrow$ | 2025. 3. 26.(예정)      | $\Rightarrow$ | 2025. 3. 26. ~ 12. 31. |

※ <u>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</u> (모집인원이 선발기업의 1.5배수에 미달할 경우 연장공고 진행할 수 있음)

# Ⅷ 유의사항

#### □ 신청 시 유의사항

- 서류접수 시 마감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,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센터는 책임지지 않음
-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, 정부 및 지자체 창업지원 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
- 서류평가 통과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(지침, 기준)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발표 평가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- 발표평가는 (예비)창업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
## □ 평가 중 유의사항

-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,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대상에서 제외함
-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로부터 4일 이내 (통보일 기산, 휴일 포함)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기관에 신청 가능함

#### □ 선정 후 유의사항

- 선정 이후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, 사업비 환수·참여제한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
- 선정자의 환수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

#### □ 선정자의 의무

- 선정자는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, 사업 완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
- 선정자가 사업비 횡령,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를 집행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
- 선정자는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,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
## 붙임 1

# 지원제외 대상 업종

| 구분 | 대상 업종  | 코드번호<br>세세분류 |
|----|--|--------------|
| 1  | 금융 및 보험업   | K64~66       |
| 2  | 부동산업   | L68          |
| 3  | 숙박 및 음식점업<br>(호텔업, 휴양콘도 운영업,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<br>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) | I55~56       |
| 4  | 무도장 운영업  | 91291        |
| 5  |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 | 9112         |
| 6  |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 | 9124         |
| 7  |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| 96           |

<sup>\*</sup>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통계청, kssc.kostat.go.kr) 참고

## 붙임 2

## 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기준(기창업자 해당, 공고일 기준)

| 신청기업<br>구분   | 상세 구분                |  |  | 창업여부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| 타인으로부터               |  | 창업아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상속/증여                |  | 창 업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기존 개인사업자<br>유지       |  | 창업아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-11 01 -1 01 |                      | 이종창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| 창 업<br>창 업                |
| 개인기업         | 기존 개인사업자<br>폐업       | 동종창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폐업 3년 초과<br>폐업 3년 까지<br>부도/파산 - 2년 초과      | 창업아님<br>창 업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기존 법인사업자<br>유지 또는 폐업 | 부도/파산 - 2년 까지<br>-                       |  | <u>창업아님</u><br>창 업        |
|              | 타인으로부터               |  | 동종유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창업아님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- 다 전으로구니<br>- 상속/증여 | 동종의 신규 법인설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창 업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3 1, 3 1             | 이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창 업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기존 개인사업자<br>폐업       | 이종창업<br>동종창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<br>폐업 3년 초과<br>폐업 3년 까지<br>부도/파산 — 2년 초과 | 창 업<br>창 업<br>창업아님<br>창 업 |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| 부도/파산 - 2년 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> 0 년<br>창업아님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동종전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인사업자의<br>창업자 지위승계        |
| 법인기업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이종창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| 창 업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기존 개인사업자<br>유지       | 동종창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발행주식 총수의 30% 이상 또는<br>최대주주                 | 창업아님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πΛ                   | 000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발행주식 총수의 30% 이내이면서<br>최대주주 아님              | 창 업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자회사 여부               | 법인 주주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<br>30% 이상이면서 최대주주 |  | 창업아님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ᇫᅬᄖᄸ                 | 동종유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창업아님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조직변경                 | 이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창 업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기존 법인사업자<br>유지 또는 폐업 |  | 창 업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<sup>※</sup> **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**: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(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)이고, 양도-양수기업 간 대표자가 동일하여야 함

 <sup>%</sup>  동종의 범위 : '한국표준산업분류(제10차)'를 기준으로 세세분류(코드번호 5자리)가 모두 일치하면 "동종"

<sup>※</sup> **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(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)** : 영 시행(2020.10.8.)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